

## 물품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제조 구매 설치(교체)
- 나. 구매수량: 시방서 참조
- 다. 기초금액: 44,990,000원(추정가격 40,900,000원 부가가치세 4,090,000원)
- 라. 계약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수의견적 제출), 총액계약, 단독계약
-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바. 납품기한: 착공(착수)일로부터 29일
- 사. 기타사항: 분할납품 불가, 현장설치도, 하자보증 1년(3%)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이어야 합니다. ※ 지점 또는 지사 견적제출 불가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사이렌(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6171606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입니다.(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붙임3】 수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4.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5.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안전대응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에 열람으로 같습니다.

##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수의견적 제출 시 아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20,185    |

※ 붙임 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위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부서와 협의 후 계약체결 응답서 제출 시 제출)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대금청구 전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6】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본 입찰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1. 건적제출 무효 및 취소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2.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건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 - 0800)로 장애해결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건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건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전자건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자건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건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배너모음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대응담당관(☎042-270-4934)
- 사업내용 관련: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도시과(☎042-270-6001)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됩니다.

2026. 9. 10.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      |                                |
|-----|---------|------|--------------------------------|
| 발주자 | 발주기관    | 발주부서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 공사 [ ] 용역<br>[ ] 물품 [ ] 기타 |
|     | 수의계약 사유 |      |                                |

|                |     |    |                                |
|----------------|-----|----|--------------------------------|
| 계약상대자<br>(확인인) | 성명  | 소속 | [ ] 개인 [ ] 법인<br>[ ] 단체 [ ] 기타 |
|                | 연락처 |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⑦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 ⑧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br>[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3】

## 수의계약 각서

|        |  |
|--------|--|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붙임5】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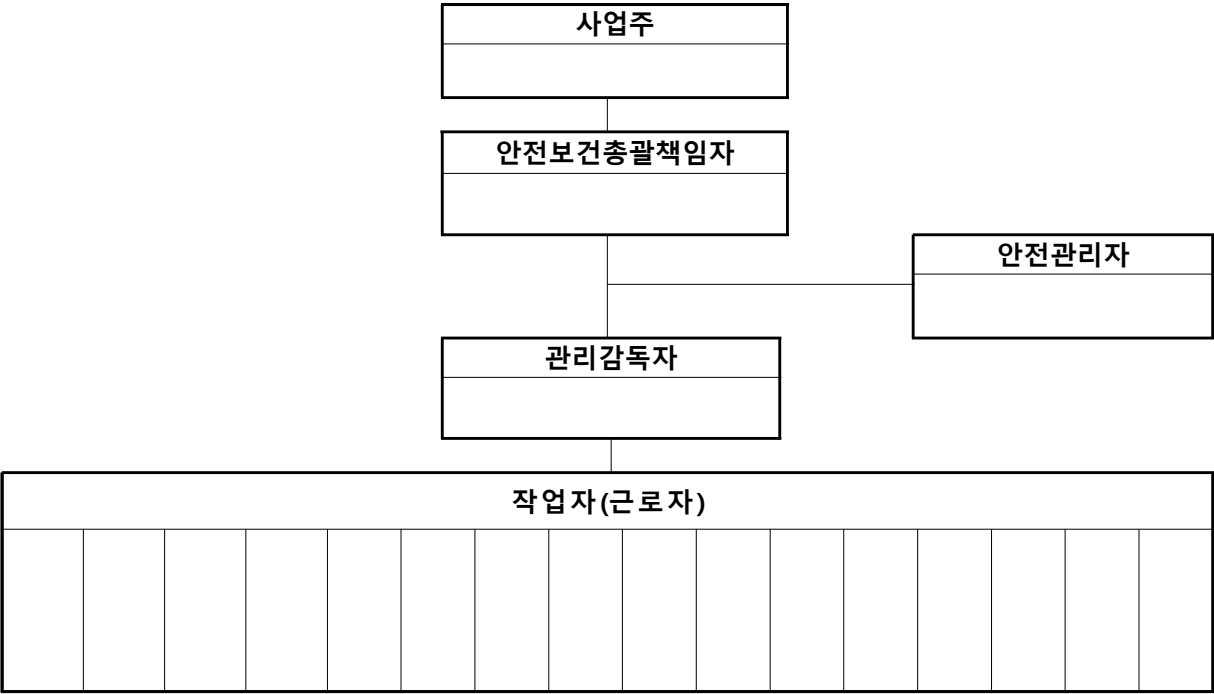
【붙임6】

안전 · 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 구 분                      | 업무 및 책임사항 | 비 고 |
|--------------------------|-----------|-----|
| 안전보건총괄<br>책임자<br>(현장대리인) |           |     |
| 안전관리자                    |           |     |
| 관리감독자                    |           |     |
| 작 업 자                    |           |     |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 종류 | 수량 | 관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 구분 | 전문인력 |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
|----|------|------------------|
|    |      |                  |
|    |      |                  |
|    |      |                  |
|    |      |                  |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 구분                      | 보호 대책 |
|-------------------------|-------|
| 작업 현장 위치                |       |
| 주변 시설물 현황               |       |
| 시설물 보호 방안               |       |
| 통행자 등 비작업자<br>보호(통제) 방안 |       |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 구분(공정설비)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
|          |         |          |
|          |         |          |
|          |         |          |
|          |         |          |

6. 안전점검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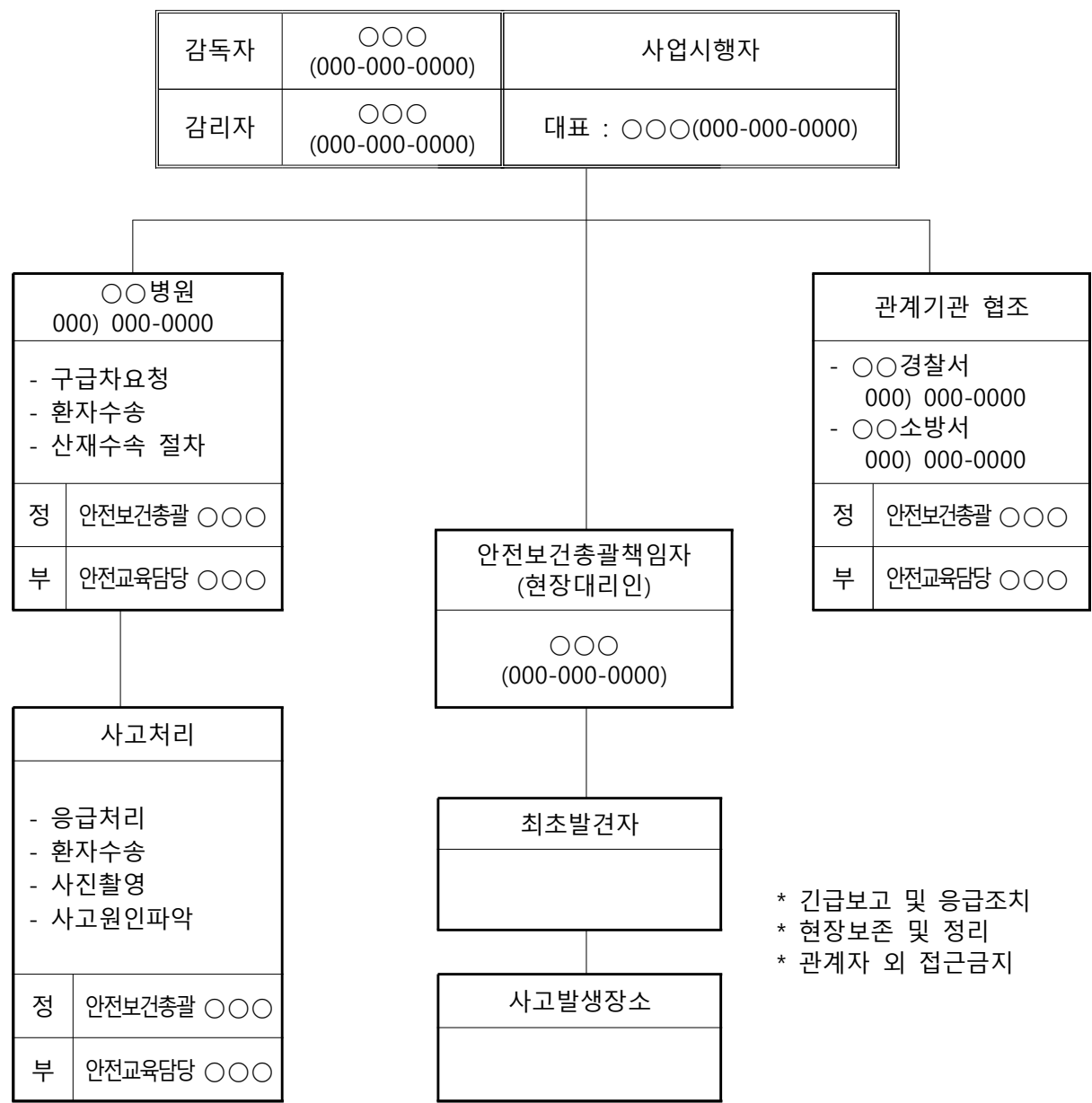
| 종류           |      | 시기         | 점검자 및 내용 |
|--------------|------|------------|----------|
| 정기점검         | 일일점검 |            |          |
|              | 주간점검 |            |          |
| 특별점검         |      | 산재 발생 시    |          |
|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      | 작업시작 전,중,후 |          |
| 도·수급인 합동점검   |      | 분기 1회 이상   |          |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 대상             |       | 시간         | 일정(계획)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반기 6시간 이상  |        |
|                |       | 반기 12시간 이상 |        |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 신규채용자 교육       |       | 1시간 이상     |        |
|                |       | 4시간 이상     |        |
|                |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1시간 이상     |        |
|                |       | 2시간 이상     |        |
| 특별안전보건교육       |       | 2시간 이상     |        |
|                |       | 8시간 이상     |        |
|                |       | 16시간 이상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4시간 이상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     |             |     |
|---------------------------------|-----|-------------|-----|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 연락처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고 발생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발생유형 2가지 이상)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 구 분  | 총계(최근 3년) |    | 2023 |    | 2024 |    | 2025 |    |
|------|-----------|----|------|----|------|----|------|----|
|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사망   | 부상 |
| 사업장명 |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